

운송사업 운송약관       신고서  
**화물자동차**    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    변경신고서  
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신고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신고내용	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	
	변경 사유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조·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·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·운송주선약관·운송가맹약관을 신고(변경신고)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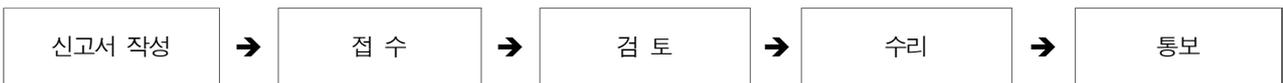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  
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      귀하  
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1. 운송약관·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. 운송약관·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·구 대비표 1부 (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 2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국토교통부·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)